

상별위원회규정

GNSAD

상별위원회규정

제정 2007. 02. 06

개정 2015. 02. 25

개정 2018. 12. 26

제1장 총 칙

제1조 (설치근거) 상별위원회(이하 “본 위원회”라 칭한다)는 규약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하며, 구성은 인사위원회로 같음한다.<개정 2015. 2. 25>

제2조 (목적) 규약 제42조에 의하여 장애인체육계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함으로써 건전한 체육풍토를 조성함에 있다.

제3조 (적용범위) 본 규정은 장애인체육회 산하 시군지부, 가맹경기단체, 장애인체육동호회와 그 단체의 산하 모든 조직의 임직원, 선수, 심판, 지도자, 등급분류사 등에게 적용한다.<개정 2018. 12. 26>

제4조 (직능)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.

1. 표창에 관한 사항
2. 징계에 관한 사항
3. 장애인체육상 추천에 관한 사항
4. 정부, 경상남도,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
5. 장애인체육회 우수선수 및 단체포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

제5조 (회의)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개최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안을 처리한다.

③ 위원이라 할지라도 계류중인 포상 또는 징계의 심의대상자가 되거나 직접 관련이 있는 자는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2장 표 창

제6조 (종류) 장애인체육회의 표창종류는 다음과 같다.

- 최우수선수상
- 우 수선수상
- 지 도 상
- 공 로 상

표 창

- 제7조 (절차)** ① 표창은 지부장, 가맹경기단체장, 장애인체육회가 인정하는 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심의 결정한다.
- ② 장애인체육회 임직원의 경우에는 직접 심의 결정할 수 있다.
- ③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 결정할 수 있다.

제8조 (표창시기) ① 표창의 시기는 정기표창과 수시표창으로 나눈다.

- ② 정기표창은 연 1회에 한한다.
- ③ 수시표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.
- 경상남도 장애인체육 발전에 공이 있는 자
 - 국내의 각종 경기대회 등에서 특별한 공을 세운 자

제9조 (구비서류)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첨의 공적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장 징 계

제10조 (징계사유) ① 장애인 체육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.

1. 이 규정 및 이 규정에 의한 지시(명령)를 위반하였을 때
 2. 직무상의 의무[가맹단체 운영규정 제5조(의무) 및 시군지부 운영규정 제6조(권리와 의무)]를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<개정 2015. 2. 25>
 3.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팀내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장애인 체육인으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인정되는자<개정 2015. 2. 25>
 4. 유언비어 등으로 화합을 해치고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자
 5. 임원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지부의 시설운영과 사업운영에 관여하거나, 해당 지부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<개정 2015. 2. 25>
 6. 친족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<개정 2015. 2. 25>
 7. 공금횡령, 편파 판정, 승부조작, 폭력,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<개정 2015. 2. 25>
 8.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경기단체의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는자<개정 2015. 2. 25>
-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.

제11조 (종류) ① 징계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의 종류로 구분한다.

1. 각종 육성 지원금(우수선수육성지원금, 가맹경기단체행정운영비, 대회참가보조금 등)의 중단 및 환수 (선수, 임원 및 경기단체) <개정 2015. 2. 25>
2. 경고 <개정 2015. 2. 25>
3. 근신 <개정 2015. 2. 25>
4. 출전정지 <개정 2015. 2. 25>

5. 자격정지 <개정 2015. 2. 25>

6. 제명 <개정 2015. 2. 25>

② ①항의 징계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별도의 제제를 할 수 있다.

제12조 (절차) ① 상벌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각각 반드시 주어야 한다.

② 상벌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징계사항 중, 동호회 관련사항은 상벌위원회에서 확정하고, 가맹경기단체 및 시군지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확정된다.

<개정 2015. 2. 25>

③ 징계가 확정되면 즉시 문서로 본인 및 소속단체에 통지한다.

④ 확정된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은 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.

제13조 (재심청구) ①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고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경남장애인체육회에 직접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<개정 2015. 2. 25>

② 본 위원회는 재심결과를 심의 결정하며 본인 및 소속단체와 징계단체에 통고한다.

③ 재심청구에 관한 경남장애인체육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, 그 효력은 결정한 날로부터 발생한다.<개정 2015. 2. 25>

제4장 부 칙

제1조 (조치사항) 장애인체육회지부 및 가맹경기단체는 본 규정에 준하여 상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.

제2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3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 <개정 2015. 2. 25>

제4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 <개정 2018. 12. 26>

공 적 조 서

(1) 성 명	(한글)		(한자)																	
(2) 주민등록 번호																				
	(3) 군 번 (군인의 경우)																			
(4) 본적(국적)	대	한	민	국																
(5) 주 소	경	상	남	도																
(6) 직 업				(7) 소 속																
(8) 직 위				(9) 직 급 · 계 급				(10) 공적기간												
원 장																				
(11) 공적요지 (50자 내외)				(12) 공적분야코드				-												
(13) 추천훈격								(14) 추천순위												
조 사 자																				
(15) 소 속								(16) 직 위												
(17) 직 급								(18) 성 명												
<p>위의 기록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400px;">년 월 일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0px;">추 천 관 : (인)</p>																				

주요 학력 및 경력

(19) 년 월 일	(20) 이 력	(21) 년 월 일	(22) 이 력

과거 포상기록(훈장 · 포상 · 표창별로 기록)

(23) 년 월 일	(24) 내 용	(25) 년 월 일	(26) 내 용

(27) 공 적 사 항

--

공적 요약서

연번	소 속	직급 (직위)	성명 (주민 등록번호)	재직기간	추천 훈격	공적개요 (50자 내외)